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68-353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4.03(금)	26.05.13(수)	26.05.18(월)	26.05.26(화)	26.05.29(금)~26.05.30(토)	26.06.02(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 제65조 및「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따라「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13(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13 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03.(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086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5.18(월)	26.05.26(화)	26.05.29(금) ~ 26.05.30(토)	26.06.02(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45-17)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충청남도 천안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 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시행위탁자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 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 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022.12.31. 개정된「인지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 또는 전매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 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증서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납부기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매계약의 경우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또는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2022.12.31.「인지세법」제8조 일부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국세기본법」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4.22.)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무순위(사후)
전매제한기간	없음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업성3도시개발구역 A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7층~39층 11개동 총 1,460세대 중 잔여 364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 표기	무순위(사후) 공급 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113	01	084.9631A	84A	127	103	201, 301, 401, 501, 601, 801, 901, 1001, 1101, 1201, 1301, 1401, 1501, 1701, 1801, 1901, 2101, 2201, 2301, 2401, 2601, 2901, 3101, 3301, 3401, 3501, 3601, 3701, 3801
					104	101,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702, 801, 802, 902, 1001, 1002, 1102, 1201, 1202, 1301, 1401, 1402, 1501, 1502, 1601, 1602, 1701, 1702, 1801, 1802, 1901, 1902, 2001, 2002, 2101, 2102, 2201, 2202, 2301, 2302, 2401, 2402, 2501, 2502, 2601, 2602, 2701, 2702, 2801, 2802, 2901, 2902, 3001, 3002, 3101, 3102, 3201, 3202, 3301, 3302, 3401, 3402, 3501, 3601, 3602, 3701, 3801, 3802, 3901, 3902
					109	203, 303, 403, 503, 603, 703, 803, 903, 1103, 1403, 1503, 3003
					110	202, 302, 402, 502, 602, 702, 802, 1102, 1202, 1302, 1402, 1702, 2302, 2802, 3102
	02	084.9637B	84B	8	109	204, 304, 504, 604
					110	201, 301, 401, 801
	03	095.7927A	95A	188	101	203, 303, 403, 503, 603, 703, 803, 903, 1003, 1103, 1203, 1403, 1503, 1603, 1803, 1903, 2003, 2103, 2203, 2403, 2603, 2703, 2803, 3003, 3103, 3303, 3403, 3503, 3603, 3703, 3803
					102	201, 202, 203, 204, 301, 302, 303, 304, 401, 402, 403, 404, 501, 502, 503, 504, 601, 602, 603, 604, 701, 702, 703, 704, 801, 802, 803, 804, 901, 902, 903, 904, 1001, 1003, 1004, 1101, 1102, 1103, 1104, 1201, 1202, 1203, 1204, 1301, 1302, 1303, 1401, 1402, 1404, 1501, 1502, 1503, 1504, 1601, 1602, 1603, 1701, 1703, 1704, 1802, 1803, 1804, 1901, 1902, 1903, 2001, 2003, 2004, 2101, 2102, 2103, 2104, 2201, 2202, 2203, 2304, 2401, 2402, 2403, 2501, 2502, 2503, 2504, 2603, 2701, 2702, 2703, 2704, 2801, 2802, 2803, 2804, 2901, 2902, 2903, 2904, 3001, 3003, 3004, 3101, 3103, 3104, 3201, 3202, 3301, 3302, 3303, 3401, 3402, 3403, 3404, 3501, 3502, 3503, 3504, 3601, 3602, 3603, 3604, 3701, 3703, 3704, 3801, 3802, 3803, 3804, 3901, 3904
					109	202, 302, 402, 502, 602, 702, 802, 902, 1002, 1102, 1202, 1402, 1602, 1702, 1802, 1902, 2002, 2202, 2302, 2402, 2502, 2602, 2702, 2802, 2902, 3102, 3202, 3302, 3502
	04	095.7890B	95B	41	101	204, 304, 404, 504, 604, 704, 804, 904, 1004, 1104, 1204, 1304, 1404, 1604, 1704, 1904, 2104, 2304, 2404, 3004, 3104, 3304, 3404, 3604, 3704
					109	201, 301, 401, 501, 601, 701, 801, 901, 1001, 1101, 1201, 1601, 1801, 2301, 3101, 3401
합계				36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세대)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 구분	공급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2026.09.11	2027.03.12	2027.09.10	2028.05.12	2028.10.13	2029.03.09	입주지정일
84A	104동 1호, 2호	1층	1	206,680,000	310,020,000	-	516,700,000	10,000,000	15,835,000	51,670,000	51,670,000	51,670,000	51,670,000	51,670,000	51,670,000	180,845,000
		2층	2	210,080,000	315,120,000	-	525,200,000	10,000,000	16,260,000	52,520,000	52,520,000	52,520,000	52,520,000	52,520,000	52,520,000	183,820,000
		3층	2	212,320,000	318,480,000	-	530,800,000	10,000,000	16,54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185,780,000
		4층	2	214,600,000	321,900,000	-	536,500,000	10,000,000	16,825,000	53,650,000	53,650,000	53,650,000	53,650,000	53,650,000	53,650,000	187,775,000
		5~6층	4	216,840,000	325,260,000	-	542,100,000	10,000,000	17,105,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189,735,000
		7~9층	4	219,120,000	328,680,000	-	547,800,000	10,000,000	17,39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191,730,000
		10~19층	18	223,640,000	335,460,000	-	559,100,000	10,000,000	17,955,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195,685,000
		20~29층	20	225,880,000	338,820,000	-	564,700,000	10,000,000	18,235,000	56,470,000	56,470,000	56,470,000	56,470,000	56,470,000	56,470,000	197,645,000
		30층 이상	18	228,160,000	342,240,000	-	570,400,000	10,000,000	18,520,000	57,040,000	57,040,000	57,040,000	57,040,000	57,040,000	57,040,000	199,640,000
	103동 1호 109동 3호 110동 2호	2층	3	206,840,000	310,260,000	-	517,100,000	10,000,000	15,855,000	51,710,000	51,710,000	51,710,000	51,710,000	51,710,000	51,710,000	180,985,000
		3층	3	211,320,000	316,980,000	-	528,300,000	10,000,000	16,415,000	52,830,000	52,830,000	52,830,000	52,830,000	52,830,000	52,830,000	184,905,000
		4층	3	215,840,000	323,760,000	-	539,600,000	10,000,000	16,98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188,860,000
		5~6층	6	220,400,000	330,600,000	-	551,000,000	10,000,000	17,55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192,850,000
		7~9층	7	225,040,000	337,560,000	-	562,600,000	10,000,000	18,130,000	56,260,000	56,260,000	56,260,000	56,260,000	56,260,000	56,260,000	196,910,000
		10~19층	17	234,400,000	351,600,000	-	586,000,000	10,000,000	19,3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205,100,000
		20~29층	8	239,160,000	358,740,000	-	597,900,000	10,000,000	19,895,000	59,790,000	59,790,000	59,790,000	59,790,000	59,790,000	59,790,000	209,265,000
		30층 이상	9	243,960,000	365,940,000	-	609,900,000	10,000,000	20,495,000	60,990,000	60,990,000	60,990,000	60,990,000	60,990,000	60,990,000	213,465,000
84B	109동 4호 110동 1호	2층	2	209,840,000	314,760,000	-	524,600,000	10,000,000	16,23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183,610,000
		3층	2	214,360,000	321,540,000	-	535,900,000	10,000,000	16,795,000	53,590,000	53,590,000	53,590,000	53,590,000	53,590,000	53,590,000	187,565,000
		4층	1	218,960,000	328,440,000	-	547,400,000	10,000,000	17,370,000	54,740,000	54,740,000	54,740,000	54,740,000	54,740,000	54,740,000	191,590,000
		5~6층	2	223,560,000	335,340,000	-	558,900,000	10,000,000	17,945,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195,615,000
		7~9층	1	228,240,000	342,360,000	-	570,600,000	10,000,000	18,53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199,710,000
95A	101동 3호 102동 1호, 2호, 3호, 4호 109동 2호	2층	6	248,253,720	372,314,800	37,231,480	657,800,000	10,000,000	22,89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230,230,000
		3층	6	253,612,800	380,352,000	38,035,200	672,000,000	10,000,000	23,6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235,200,000
		4층	6	259,047,360	388,502,400	38,850,240	686,400,000	10,000,000	24,32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240,240,000
		5~6층	12	264,519,660	396,709,400	39,670,940	700,900,000	10,000,000	25,045,000	70,090,000	70,090,000	70,090,000	70,090,000	70,090,000	70,090,000	245,315,000
		7~9층	18	270,067,440	405,029,600	40,502,960	715,600,000	10,000,000	25,780,000	71,560,000	71,560,000	71,560,000	71,560,000	71,560,000	71,560,000	250,460,000
		10~19층	49	283,578,360	425,292,400	42,529,240	751,400,000	10,000,000	27,570,000	75,140,000	75,140,000	75,140,000	75,140,000	75,140,000	75,140,000	262,990,000
		20~29층	47	287,050,440	430,499,600	43,049,960	760,600,000	10,000,000	28,030,000	76,060,000	76,060,000	76,060,000	76,060,000	76,060,000	76,060,000	266,210,000
		30층 이상	44	290,447,040	435,593,600	43,559,360	769,600,000	10,000,000	28,480,000	76,960,000	76,960,000	76,960,000	76,960,000	76,960,000	76,960,000	269,360,000
95B	101동 4호 109동 1호	2층	2	251,348,400	376,956,000	37,695,600	666,000,000	10,000,000	23,3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233,100,000
		3층	2	256,782,960	385,106,400	38,510,640	680,400,000	10,000,000	24,020,000	68,040,000	68,040,000	68,040,000	68,040,000	68,040,000	68,040,000	238,140,000
		4층	2	262,255,260	393,313,400	39,331,340	694,900,000	10,000,000	24,745,000	69,490,000	69,490,000	69,490,000	69,490,000	69,490,000	69,490,000	243,215,000
		5~6층	4	267,803,040	401,633,600	40,163,360	709,600,000	10,000,000	25,480,000	70,960,000	70,960,000	70,960,000	70,960,000	70,960,000	70,960,000	248,360,000
		7~9층	6	273,426,300	410,067,000	41,006,700	724,500,000	10,000,000	26,225,000	72,450,000	72,450,000	72,450,000	72,450,000	72,450,000	72,450,000	253,575,000
		10~19층	13	287,088,180	430,556,200	43,055,620	760,700,000	10,000,000	28,035,000	76,070,000	76,070,000	76,070,000	76,070,000	76,070,000	76,070,000	266,245,000
		20~29층	4	290,598,000	435,820,000	43,582,000	770,000,000	10,000,000	28,5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269,500,000
		30층 이상	8	294,070,080	441,027,200	44,102,720	779,200,000	10,000,000	28,960,000	77,920,000	77,920,000	77,920,000	77,920,000	77,920,000	77,920,000	272,720,000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로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청약시)	084.9631A	084.9637B	095.7927A	095.7890B
약식표기	84A	84B	95A	95B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그 증감 비율이 허용오차범위 이내에서 변동될 경우 별도 상호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하는 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상위계획 변경 및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상호정산 처리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보강토 블록,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 (면적산출근거에 의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처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펌프실, 주차장 등)은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가 적의 조정로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인지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 사업관계자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대출이자납부일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단,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시는 실제입주일)까지 사업주체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에는 계약서상의 연체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차 계약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금액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 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5.26.(화) ~ 2026.06.04.(목)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5.26.(화) 08:00 (제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일정 및 장소

구분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일시 : 26.05.29(금) ~ 26.05.30(토) 10:00 ~ 17:00	**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 견본주택**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45-17**

※ 서류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 시 일정 재안내 드립니다.

※ 당첨자의 서류접수 일정 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동일한 일정에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접수 기간 내 방문하시어, 서류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6.05.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7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 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체결기간	계약체결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6.06.02(화) 10:00 ~ 17:00	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 견본주택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45-17)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자격검증 사전서류 제출자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서류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함)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서명으로 가능하나 대리인 계약 불가하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조날인 확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 / 단, 여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필요)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필증)	본인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방법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대리인 계약시 추가 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 / 단, 여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필요)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국문 원본서류를 제출하며(사본 불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 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추후 별도 안내(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추후 별도 안내(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국민은행	735701-01-456587	교보자산신탁(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납부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1차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모계좌(국민은행 735701-01-456587 교보자산신탁㈜)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자격검증 결과 공급자격을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및 선납할인은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기준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시행위탁자 디에스디삼호㈜, ㈜제이에스비앤알과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시행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교보자산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교보자산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시행위탁자 디에스디삼호㈜, ㈜제이에스비앤알임을 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은 시행위탁자 디에스디삼호㈜, ㈜제이에스비앤알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 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시행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디에스디삼호㈜, ㈜제이에스비앤알이 부담한다.
-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시점"에, 교보자산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시행위탁자 디에스디삼호㈜, ㈜제이에스비앤알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을"은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디에스디삼호㈜, ㈜제이에스비앤알 또는 시공사 ㈜대우건설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교보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은 반드시 교보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시행위탁자 디에스디삼호㈜, ㈜제이에스비앤알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교보자산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시행위탁자 디에스디삼호㈜, ㈜제이에스비앤알과 매수인 간에 또는 시공사 ㈜대우건설과 매수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교보자산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시행위탁자 디에스디삼호㈜, ㈜제이에스비앤알 및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 촉구 통지를 하는 행위는 교보자산신탁(주)를 대리하여 디에스디삼호㈜, ㈜제이에스비앤알이 행사할 수 있다.)
  가.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나.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다.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연체료·위약금 등의 채무를 감면하는 행위
  라.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마.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바. 기타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매도인 겸 수탁자(교보자산신탁(주))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
-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교보자산신탁㈜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제이에스비앤알	㈜대우건설
법인등록번호	110111-1617434	110111-0702824	160111-0461840	110111-2137895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B동 7,8층 (서초동, 교보생명보험 (주)서초사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14층 (인계동, 마라톤빌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71, 709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A동

■ 견본주택 및 현장 위치 안내

견본주택 및 현장 약도	주소 및 문의처	
	견본주택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45-17
	현장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364번지 일원
	분양문의	1668 - 3535
	홈페이지	https://prugio-lakecity.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